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10. 24(수), 14:00 ~ 17:30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2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3	「한라산 백록담」 명승 지정	공개
4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낙동강 살리기 41공구 허가사항 변경	공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제방사면 정비	공개
6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물량장 설치	공개
7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시설 신축	공개
8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주변 농로포장	공개
9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주변 소매점 신축	공개
10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지형지명 안내표지석 설치	공개
11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상수도 시설 공사	공개
12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13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허용기준 조정	공개
14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체험학습장 조성	공개
15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산지」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	공개
16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공개
17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증계기 및 무인카메라 전주 설치	공개
18	「담양 식영정」 주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공개
19	「서울 백악산」 **** **생활관 증축 공사	공개
20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주택 신축	공개
21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수목 벌채	공개

【검토사항】

22	「포천 화적연(禾積淵)」 명승 지정 검토	공개
23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문화재 지정 해제 검토	공개
24	「제주**** 건설」 오탁방지막 설치계획 변경 검토	공개

【보고사항】

25	「장흥 옥당리 효자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통합 조정	공개
26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2-10-01

1.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주개 동경이」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개 동경이」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경주시장)

(2) 신청내용

- 명칭 : 경주개 동경이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축양동물)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
- 지정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에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등록견
- 적정사육두수 : 300두
- 지정가치
 - 경주개 동경이는 삼국사기(660년), 동경잡기(1669년) 등 옛문헌에 다수 등장하며, 신라고분군에서 동경이로 보이는 개토우가 출토되고 있음.
 - 신라시대부터 경주지역에서 많이 사육되었던 토종개로 경주개 동경이 혈통 고정화 연구수행을 통해 개체확보와 사양관리 중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개인 경주개 동경이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필요함.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장

라. 검토의견(*****)

- 지정예고시 제기된 서라벌대학내 동경이(180두) 소유권에 대한 보존협회와 서라벌대학간 분쟁은 단체별 각 50%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주시가 관리단체가 되는 것으로 조정·합의하여 그 동안 소유권 미확정에 따른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임.

다만, 지정예고 기간 중 동경이 표준체형 관련 이의제기 사항과 이에 대한 경주시의 소명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마. 문화재 현황

○ 역사적 의의

- 경주개 동경이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동경구라는 이름이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동경잡기(東京雜記)』(1669년), 동경구의 외형적인 형태를 기록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19세기) 등 10여 편의 고문헌 기록과 5-6세기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개 토우 유물 등에 의해 경주개 동경이는 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육된 토종개임.

○ 서식지역 또는 사육지역

- 경주 부윤 민주면이 저술한 동경잡기(東京雜記, 1669년), 증보문헌비고, 임하필기 등에 “동경(고려시대의 경주의 옛 지명)에는 꼬리 짧은 개가 많이 태어난다” 라는 문헌기록과 20세기에 발간된 국어 대사전(이희승, 1982, 삼성, 한국어 사전편찬회) 등에도 “동경이(동경개)는 옛날 경주 지방에 많았다는 개를 지칭한다”라는 사전적 기록과 꼬리 짧은 개 토우 발굴 지역 등으로 보아 동경이(東京狗)의 서식 및 사육지역은 경주 주변지역으로 고증됨.
- 동경이는 1930-40년대 일본 사학자에 의해 울산 학성관 종루 앞에서 촬영된 이후부터 경주 주변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해안지역의 민가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함. 1990년대 꼬리 짧은 개의 사육지역은 경주 해안지역인 감포, 양북과 불국사 지역 등의 경주 주변 지역이며, 경주개 동경이의 혈통고정화 사업을 시작한 이전부터 감포(김유리, 이옥철, 김상진), 불국사(정영희), 시내지역(박병후, 조영도) 등의 6 농가에서 35두가 조상대대로 사육되어 왔던 것으로 구전으로 전해임.
- 혈통고정화 사업에 사용한 경주개 동경이 원종은 2007년부터 경주시 축산과에서 종의 유출로 인한 잡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차원에서 사료비를 지급하여 보호하고 있었던 80마리와 등록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36마리 등, 최종 121마리를 서라벌대학 동경이 보전연구소의 최석규교수 연구팀(성기창, 이은우, 박순태, 박창은)에서 수거하여 혈통고정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수거된 개체중 유연관계와 외형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73개체를 혈통고정화 사업의 원종으로 하여 계통번식을 시작함.

○ 외형 및 유전형질

<고증적 외형>

- 경주개 동경이의 외형은 ①5-6세기 신라고분군에서 출토된 개토우의 외형과 ②동경잡기 卷1風俗 女子北髻 편의 쪽머리 형태(북계)와 같은 단미를 하고 있다는 기록과 ③삼국사기,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장자구(노루새끼), 녹미구(사슴꼬리)에 관한 기록 등의 고증자료를 경주개 동경이의 외형기준으로 삼았고, 또 ④1930-40년대 서울대 규장각에 유리원판 사진으로 소장하고 있는 학성관 종루 앞에서 찍힌 꼬리 짧은 개를 체형의 기본으로 삼음

<유전형질>

- 경주개 동경이는 현재 5대까지 번식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유전형질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학적 검사 항목

1. 혈구 검사, 혈청 화학적 검사
 2. 혈액형 검사
 3. 핵형분석
 4. 혈액단백질 분획조사,
 5. 특이적 발현 후보 유전자 마커 발굴
 6. Microsatellite loci 분석
 7.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8. 토종견(진도,삽살,풍산,불개)과 외래종(골든리트리버, 셰퍼드, 라이카, 마르노이즈, 불독, 보더콜리)의 ①유연관계,②최소유전자거리,③표준유전자거리를 분석
- 경주개 동경이와 토종개(진도,삽살,풍산,불개)의 유연관계 계통수(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genetic relationship)를 작성한 결과 동경이는 안정된 유연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표준유전자거리(Standard genetic distance)와 최소유전적거리(Minimum genetic distance)를 각각 UPGMA, NJ방법으로는 확인한 결과 경주개 동경이는 한국 토종개 그룹에 속하며, 진돗개와 가장 가까운 유전자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돗개와는 전혀 다른 고유의 견품종임을 알 수 있음.

○ 품종표준의 확립

- 꼬리 짧은 개의 이름은 동경잡기에서 처음 동경구(東京狗)로 명명되었고, 이희승씨의 국어대사전에서 "경주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꼬리 짧은 개를 동경이, 동경개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20세기까지 경주지역에서는 동경이, 신라개 등으로 명명되었으며, 경주시와 서라벌대학 동경이 보전연구소의 문헌적인 고증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라 지역명을 첨가하여 "경주개 동경이" "東京狗" "Gyeongju dong Dog"로 칭하고, 2009년 6월 8일 제1회 "경주 시민의 날"에 명명식 및 선포식을 가짐.
- 황남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파편의 개 토우와 1930-40년대 울산 학성관 종루 앞에서 찍힌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역사적 사실로 하여 품종표준 기준을 마련함.
- 경주개 동경이의 표준품종 기준은 1차적인 선별을 거쳐 표준화된 사양관리 기준에 따라 사육한 73마리와 계통 번식하여 생산된 개체를 대상으로 세계 품종표준 분류를 의거하여 품종표준 기준을 확립함.

○ 군집규모

- 경주개 동경이는 서라벌대학 애견테마파크 번식장과 일반 사육농가, 경주 양동 민속마을(경주시 지정 동경이 사육마을), 1차 분양농가, 2차 분양농가, 3차 분양농가 등 56농가에서 백구218두, 황구50두, 흑구22, 호구16두 등 2011년 12년 3월 현재 총306마리사육.

○ 사육시설

- 경주개 동경이 사육시설은 서라벌대학 애견테마파크 번식장과 최초 일반 사육농가, 경주 양동 민속마을(경주시 지정 동경이 사육마을), 1차 분양농가, 2차 분양농가, 3차 분양농가 등이 있으며, 각각의 사육시설은 동물 복지법에서 제시한 표준 사육환경을 확보하여 사육하고 있음.

○ 사양관리

- 경주개 동경이의 사양관리는 사)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의 사양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양관리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전 개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및 혈액학적 혈구 및 화학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진단, 병성감정, 영양장애 등 사양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사육농가의 정기적인 사양관리 교육자료로 활용
- 품종표준 관리를 위해 방사선 촬영, 표준 체형조사를 실시하여 품종 표준 확인과 도태 및 번식중지 대상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

바.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12. 3. 8)>

- 동경이는 1669년 동경잡기 이후, 유광익의 대동야승(1720년경),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 유득공의 신라회고(1770), 이만운(1782)의 증보문헌비고, 이의봉의 고금석림(1789), 이학규(1770-1835)의 낙하생집, 성해옹의 연경재전집(1840 추정), 19세기 중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이유원의 임하일기(1871), 1898년경의 해동지, 1919년에 편찬한 경주읍지에 꼬리짧은 동경구에 대한 기록이 있고, 1930-40년대의 울산 학성관 종루와 함께 꼬리 짧은 개가 촬영된 사진자료와 5-6세기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개 토우 중에 대부분은 꼬리가 짧은 것으로 보아 동경구는 1900년 중반까지 경주와 주변지역에서 사육되어왔던 견종으로 우리 고유의 종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동경잡기, 증보문헌비고, 임하필기 등에 “동경에는 꼬리 짧은 개가 많이 태어난다.” 라는 문헌 기록과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꼬리 짧은 토우 등으로 보아서식지역은 경주와 경주주변임을 보여주며, 1990년대 꼬리 짧은 개의 사육지역은 경주 해안지역인 감포, 양북과 불국사 지역등 경주 주변지역이며, 동경이의 혈통고정 사업 이전부터 감포, 불국사, 경주시내 등 6농가에서 35두가 조상대대로 사육되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동경이의 외형은 문헌에 나와있는 쪽머리형태의 단미, 장자구, 녹미구등과 유사성이 있으며 현재 5대까지 번식이 이루어진 상태로 유전형질을 확인하기 위해 DNA분석결과 한국 토종개에 속하며, 진돗개와 가장 가까운 유전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진돗개와는 전혀 다른 고유의 견종으로 확인됨.
- “경주개 동경이”의 명칭은 문헌에 나타난 동경구와 서식지역을 따랐고, 표준품종은 1차작인 선별을 거쳐 사육한 73마리를 기반으로 계통번식하여 생산된 개체를 대상으로 세계품종표준 분류에 준하여 품종표준 기준을 확립함.
- 동경이는 현재 서라벌대학의 사육장과 경주양동마을 등 일반 사육농가 등 56농가에서 306마리(백구 218두, 황구 50두, 흑구 22두, 호구 16두)의 군집규모가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체군이 유지 관리될 수 있을 것임.
- 서라벌대학 애견테마파크와 제2번식장에서는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으나, 경주 양동마을과 일반 사육농가에서는 개별사육장을 표준화하여 사육하고 있음. 서라벌대학에서는 훈련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경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사양관리는 일상관리, 영양, 질병관리 등을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양관리 기록은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 사양관리 일지, 번식일지, 혈통시스템, 질병 및 예방접종관리, 혈통서 발급 등은 기록되며, 인터넷 네트워크(www.donggyeong.com)를 통하여 관리 확인하고 있음. 개체식별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함.
- 2009년 10월 1일 (사)한국 경주개동경이 보존협회를 창립하여 동경이 보존 및 홍보, 연구를 수행하여 동경이 품평회와 더불어 한국애견협회와 아시아애견연맹으로부터 토종견종으로 인정받았으며, 수차례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음.
- 학술연구는 주로 동경이보전연구소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의 동경이 연구결과로 연구팀 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형태, 유전, 혈액학 등 동경이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 7건이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되었고, 15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음.
-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경주개 동경이의 지정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의 동물 기준에 명시된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과 그 산지”의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경주개 동경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자료 검토 결과,
 - 여러 관련문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1669년) 경주지역에서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동경이의 외형이 문헌과 일치하는 것은 고유한 견종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경주지역의 토착견종으로서의 서식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 5대에 걸친 유전형질의 고정작업으로 품종표준을 세우고 300마리 이상의 군집을 형성하여 품종의 보존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양관리, 혈통관리, 개체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질병관리를 하고 있으며
 - 동경이 보전연구소와 한국경주개동경이 보존협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보전 활동과 연구,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 향후 보완할 사항으로는
 - 협회와 연구소에서 직접 사육 관리할 개체는 개의 특성을 고려 종보전의 최소 개체수로 하고, 그 이외의 보존개체는 농가에 위탁 사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며(전체 종모 종빈전수의 조정도 필요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 개와 삼살개를 참고하여 자견의 외부반출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구소 테마파크에서 사육중인 개체 중 좁은 단독견사에 수용된 개체는 사육장 시설을 추가하거나 농가위탁사육 등의 조치를 하여 사육여건을 개선

해 주어야 함.

- 위탁농가는 협회나 연구소에서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선정하여 관리매뉴얼에 따른 사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됨.

<*** 충남대교수('12. 3. 8)>

- 서라벌대학내 애견테마파크, 경주 양동마을(위탁견) 등 270여 개체 사육
- 5-6세기경 조성된 신라고분군에서 꼬리 짧은 개의 토우 출토
- “동경구”라는 표현의 문헌 및 기록에 따라 신라시대 이전부터 경주주변에 사육되었던 것으로 추정
- 연혁
 - 2005년 동경견 역사성연구 및 개체수잡 등 혈통고정화 진행 (서라벌대학 ***교수팀)
 - 2006-2008년 동경견 보전 육성사업 추진 (경주시 지원)
 - 2009년 (사)경주개 보전협회설립
 - 2011년 아시아 토종견 공인 (아시아 애견연맹)
- 유래
 - 삼국사기 백제본기(1145), 동경잡기(1669), 오주연문 장전산고(19C중엽) 등 경주개 동경이 관련 문헌 기록 및 5~6세기 신라고분군 출토 개토우, 동경잡기 기록, 1930~40년대 사진
- 특징
 - 꼬리가 짧거나 없고, 다리부위가 몸통보다 길며, 장방형으로 흉부, 흉심, 대퇴부가 발달
- 지리적분포, 이름유래와 외형적 특성을 보았을 때 역사적가치는 인정되나 학술적으로 동경이 특유의 유전적 형질 특성분석이 미흡함.
- 꼬리가 짧은 개는 유전적 결함이나 발생과정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동경이 품종 고유의 차별성을 가진 유전적 마커나 유전자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 중 삼살개, 진돗개의 규정과 문화재청 축양동물 천연기념물 관리지침의 품종표준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어 왔음.
- 사양 및 혈통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잡종 방지를 위하여 경주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경이의 유전적 형질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보였으나, 종 특이적인 유전적 형질(예를들어 짧은 꼬리의 원인유전자 및 유전적 소인)에 대한 특징을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전남 나주지역의 맹견, 선천적 결함에 의한 단미 및 무미견과의 차이점을 밝혀 경주 동경이의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동양대교수('12. 3. 8)>

- 경주의 고려시대 지명인 동경 지역에 꼬리 짧은 개 또는 꼬리 없는 개가 다수 축양되었으며, 그 개를 동경(東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문헌 및 고증자료로 확인 됨.
- 1930~1940년대 울산 학성관 종루 앞에서 촬영된 이후 경주 주변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0년 초반부터 해안지역인 감포·양북·불국사 지역의 민가에 출현함.
- 1950~1999년까지는 38두가 사육되었으며(구전자료 포함), 2000~2006년까지는 47두(암-27, 수-20)가 사육되었음.
- 2007년부터 서라벌대 동경이 연구팀에서 통합적으로 사육관리 하였음.
- 2009년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 경북도 사단법인 설립.
- 2011년 기준으로 56농가 및 협회, 연구소 등에서 총 306두를 사육하고 있어 개체수는 300두를 넘었음.
- 1669년 저술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 “구지단미자세위지(狗之短尾者世謂之) 동경구(東京狗)”
- 1770년 저술된 증보문헌비고에 “무미견(無尾犬) 위지(謂之) 동경견(東京犬)”
- 1800년경 저술된 낙하생집에 “영남낙부(嶺南樂府) 동경구(東京狗)”
- 1850년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영남(嶺南) 경주부(慶州府) 견개단미(犬皆短尾) 고명(故名) 동경구(東京狗)”
- 5~6세기 신라고분 군 출토 토우 중 꼬리가 짧은 개의 토우가 다량 출토됨
- 1930~1940년대 울산 학성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꼬리가 짧은 개가 나옴
- 동경이의 외형적 특징으로는 꼬리가 없거나(미추골이 1~4마디) 짧으며(미추골이 5~9마디), 그 외의 모색(毛色), 두형(頭形) 및 체형(體型)은 진도개와 비슷하다. 기질은 선천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나 진도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규정한 동경이는
 - 1600년대부터 동경(경주)지역에서 축양되어온 동물로써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1990년대부터 경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축양된 동물임.
 -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와 가까운 유전적 거리를 나타내며, 외형적으로도 꼬리부위를 제외하고는 진도개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꼬리부위에 해당하는 미추골의 마디수가 1~9까지로 없거나 짧다는 것이 유전적으로 고정되고 있어, 진도개와의 이종성(異種性) 여부를 떠나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적인 가치가 있음.
 - 분포지역 또한 경주를 중심으로 사육되어 있어 경주 특유의 축양동물로 인정할 수 있음.
- 오수견 등 적지 않은 전통견이 사라지고, 외래종의 도입이 늘고 있는 현황에서 예로부터 사육해온 동경이는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로써 기형적 발생인가 변종적 발생인가는 뒤로하고, 유전적 고정화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요구됨.

-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로의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 동경이의 미추골에 대한 범위가 1~9마디로 너무 넓은 편이므로, 동경이의 명확한 차별화를 위하여 향후 개체수의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좁힐 필요(1~4마디)가 있음.
 - 현 단계에도 두상이사 체형들을 살펴보면, 외형이 진도개뿐만이 아닌 아끼다 등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품종들 섞여 있는 것을 감지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순수 혈통화가 필요함.
 - 현장 조사 결과 현재 사육 동경이의 외형(체형, 두상, 털 길이 등)의 동질성의 폭이 너무 넓으므로, 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표준형 지향적 사육 관리가 요구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2.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합천 해인사 학사대에 있는 전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2. 8. 0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 8. 22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12. 9. 10 ~ 10. 09 지정예고(관보공고),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경상남도 합천군수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 소유자 :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
- 지정가치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최치원과 관련된 문헌과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어 있어 규모와 역사성이 우수하여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구역 : 1필지 / 58.2㎡
- 문화재관리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주요현황
 - 수종 : 전나무
 - 수령 : 250여년
 - 규모 : 총1주

수관폭(W)		수고(H)	흉고둘레	근원둘레(R)
동서	남북			
18.2m	14.3m	30.0m	5.07m	6.60m

- 나무의 특징

- 원 줄기는 곧 바르며 약 5m 높이에서 굽은 북서쪽 가지가 나와 45도 뻗었다가 다시 원줄기와 약 2m 간격으로 나란히 자라며, 원래 북쪽으로 뻗은 가지가 하나 더 있었으나 풍수해 피해(벼락)로 잘려나갔음.
- 수관이 동쪽으로 치우쳐 발달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라본 수형은 경사지 아래쪽으로 치우친 삼각형 형태임.

- 입지환경

- 해인사 주변 울창한 숲은 사찰 중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름다운 경관으로 알려져 있어 해인사 전역의 생육환경은 좋은편에 속함.
- 해인사 대적광전 서쪽 높다란 언덕에 위치한 전나무는 주변에 느티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이 있으나 북쪽은 주로 숲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최근 설치된 관람동선이 있다. 이 동선으로 인하여 줄기에서 약 7m지점에 높이 약2m 가량의 석축이 설치되고 중앙에는 위를 오르는 계단이 있음..
- 팔만대장경 관람 통로는 대적광전 뒤 계단이었으나 최근 학사대 전나무 아래로 주통로를 다시 내었으나 통로는 학사대 보다 지대가 낮고 전나무 수관(樹冠) 밖이어서 나무에 다른 피해는 없음.

- 유래 및 전설

-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 말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857~?) 선생이 심었다는 전설을 갖고 있으며, 진성여왕 8년(894년) 나이 37살 때 아손(阿飡)이란 벼슬을 받았으나 6두품이라는 그의 신분한계와 부패한 사회상을 한탄하여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방랑생활에 들어간다.

그는 지금의 대적광전 서쪽 언덕에 자그마한 정자를 짓고 그가 지낸 한림학사란 벼슬이름을 따 학사대(學士臺)라 했다. 여기서 선생이 가야금을 쳐면 수많은 학이 날라와 고운 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조용히 글을 읽고 시를 읊조리면서 유유자적한 만년을 보내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꽂고 갈 것이니 만약 싹이 터서 잘 자란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 학문에 전념하라.’면서 홍제암 뒤 진대밭골로 사라져 버렸다. 선생은 이후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선생이 꽂아 둔 지팡이가 자라 지금의 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생이 돌아가신 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900년대 초로 본다면 전설의 전나무 나이는 약 1,100년에 이른다.

- 조선 초기에 편찬한 지리서 《동국여지승람》 ‘고운선생 사적’이란 항에 ‘학사대는 해인사 서쪽에 있고 곁에는 높이 1백 척(尺)에 이르는 늙은 전나무가 자라며 둘레가 3장(丈)여에 이른다(邊有百尺老檜 腰大三丈餘).’고 했다. 또 조선 중기의 문신 박이장(朴而章)의 시문집인 《용담집(龍潭集)》에도 전나무가 등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조선 초 중기에도 학사대 전나무는 우람한 크기에 고목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나무는 조선 중기의 어느 날 죽어버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 선생의 《백불암집》이란 시문집에 학사대 전나무 이야기가 나온다. 문집 안에 영조33년(1757년) 최흥원은 해인사를 관람하고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에 이런 글을 남긴다. “ 고운 최치원 선생이 손수 심은 소나무(실제로는 전나무)가 이미 말라버리고 그 등결만 남았다. 지금 마침 2월이고 비가 오니 소나무를 심기에 적합하므로 종을 시켜 4그루의 작은 소나무를 캐서 그 곁에 심게 했다(而孤雲手植松已枯 獨其查在矣 余以爲此行適值二月 天又雨 正合植松 乃命奴採四小松 植其傍).”고 하였다.
- 이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전나무는 원래 자라던 학사대 전나무의 후계목으로서 1757년에 심은 4그루 중 한 그루가 살아남았음을 알 수 있다. 전나무의 특성으로 볼 때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가 아니므로 대체로 지금의 나무는 최치원 선생이 심은 나무의 손자나무쯤으로 짐작된다.

라. 검토의견(*****)

-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말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래가 문헌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고 기존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마. 전문가 조사의견(현지조사 2012. 8. 1)

<*** 문화재위원>

- 수형이 다소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나무의 가슴높이 줄기둘레나 수고가 보기드문 노거수이며, 최치원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 1757년경 후계목을 식재한 기록도 남아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연유산임.
- 따라서 이 전나무는 현재의 경상남도기념물(제215호)에서 그 격을 높여 국가 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됨.
- 이 전나무는 나무 옆에 설치된 경상남도기념물(제215호) 표지판에 수령이 1000년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나무의 크기나 김홍영의 ‘학사대 전나무’(월간 해인 2002년 7월호) 기록으로 볼 때 그 수령을 250년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음.

<*** 문화재위원>

- 처음 고운 최치원선생이 심은 나무는 고사했지만 이후 백불암(百弗庵) 최흥원 선생에 의해 후계목이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많은 노거수가 이렇게 후계목으로 이어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나무의 규모는 기 지정된 천연기념물 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와 비슷하고 수형도 다소 부족하나 문화재로서의 값어치가 높고 해인사를 찾는 많은 관람객에 의해 문화재로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다.
- 현재 경남기념물 215호이나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 조건인 나무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천연기념물로의 승격 지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 전 문화재위원>

- 학사대 전나무는 고운 최치원과 관련된 여러 전설을 갖고 있고 선인들의 시문집에도 흔히 등장하며, 250여 년 전에 후계목으로 다시 심은 선조들의 정성이 깃든 역사 나무이다.
-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유물인 팔만대장경판 관람 통로와 바로 붙어 있어서 수많은 대장경 관람객들이 한번은 들러보는 의미 있는 위치에 자리한다.
- 나무의 규모는 기 지정된 천연기념물 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와 거의 같으나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는 훨씬 높다.
-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 조건인 나무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고 나무의 굵기나 높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고 전나무다. 현재 경남기념물 215호이나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이 바람직하다.

바. 문화재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임야	11,292,216	58.2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대한불교조계종 ***

사. 지정예고기간 의견수렴 : 의견없음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3. 「한라산 백록담」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0.8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연구용역결과 우수자원 선정
 - '12.8.16~17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 9. 3 ~ 10. 4 지정예고(관보공고),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산15번지 일원 192,145m²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한라산 백록담은 영주 12경 중의 하나이며, 한겨울 동안 쌓인 눈은 여름철 까지 남아 있어 '늑담만설(鹿潭晩雪)'이라고 한다.
 - 백록담(白鹿潭)의 명칭의 유래는 한라산 정상에 백록(흰사슴)이 많이 놀았기에 명명되었다고 하며, 백록담과 관련된 고문헌으로는 최익현(崔益鉉)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漢拏山)유람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한라산 정상 백록담 주변의 화산암들은 수 천년 전에 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용암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을 볼 수 있으며, 정상부 분화구 호수인 백록담은 학술적 가치가 크고,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화산지형이며, 또한, 풍화나 침식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순상화산의 원지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음.
 - 현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존지역이며,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음.
- 문화재구역 : 1필지 / 192,145m²
- 문화재관리단체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한라산은 해발 1,950m로서 동서로 600m, 남북으로 500m, 둘레 3km, 깊이 110m의 산정호수로 가물 때가 아니면 1~2m이내의 물이 고여 있다.
- 한겨울 동안 쌓인 눈은 이듬해 이른 여름철까지 남아 있어 등산객들에게 시원한 맛을 안겨준다 해서 녹담만설이라고 하며, 영주 12경중의 하나다.

○ 유래 및 전설

- 옛날에 힘이 세고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냥이 실통치 않았다. 온종일 산을 뒤져도 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침 새 한 마리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 맞은편 바위 위에 앉는 것이었다.
- 그는 재빨리 활의 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새는 맞지 않고 ‘포르르’ 날아가더니 좀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아 버렸다. 사냥꾼은 다시 한발의 활을 더 쏘았다. 그러나 허탕이었다.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세 번째 시위를 당겼다.
- 그런데 그 화살은 새를 맞지 못하고 낮잠 자는 옥황상제의 배를 맞히고 말았다. 화가난 옥황상제는 벌떡 일어나면서 사냥꾼이 서있는 한라산 정상에 걸어들었다. 그 바람에 산꼭대기가 잘려나가 앞 바닷가에 떨어졌다. 그것이 안덕면 사계리 지경 바닷가에 있는 산방산이 되었고, 한라산 정상은 움푹 들어가 버렸다.

○ 지형·지질 현황

- 한라산은 제주도의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순상화산의 중앙 정상부이며, 남한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제4기 화산활동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 한라산은 정상부 분화구 호수 즉 산정화구호(山頂火口湖)인 백록담에 의해 만들어진 빼어난 화산지형을 이룬다. 한라산은 풍화나 침식에 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순상화산의 원지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 백록담의 지형은 서쪽 사면에서 상부에서 하부로 사면 불안정을 나타내는 반면, 동쪽 사면에서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한편, 북쪽 사면에서는 위로부터 급경사를 이루고, 남쪽 사면에서는 절벽의 상부와 중간에서 급경사로 사면 불안정을 이룬다. 산정의 분화구는 N86°E방향의 장경이 585m, 단경 375m이다. 분화구 외륜산의 능선은 서쪽의 한라산 정상 해발 1950.1m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해발1,935.2m→1,857.5m→1906.3m→1,928.5m→1,893.0m→1,918.0m→1,919.2m→1,944.9m→1946.2m 고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분화구의 둘레는 약1,720m이다.

- 와룡산릉으로부터 분화구의 깊이는 19.5m~111.9m로서 분화구 내부의 가장 낮은 곳의 고도는 해발 1,838m이다. 분화구 호수(화구호)인 백록담의 평상시 담수면적은 약 160m×100m이고, 수면의 고도는 해발 1,839m, 수심은 1m~2m 이내이다.
- 한라산은 현무암 내지 조면암질 용암들과 몇몇 오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부에는 깊이 108m, 폭 550m의 분화구인 백록담이 있다. 한라산은 제주 화산활동 초기의 우세한 수성화산활동에서 용암 분출로 대체되는 중기 플라이스토세, 약 78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 한라산 정상 백록담 주변의 화산암들은 수 천년 전에 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라산 정상 화산암들은 최근에 분출하였기 때문에 깨끗한 화산 지형과 암층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한라산의 정상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용암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을 제공한다.
- 한라산 백록담은 서편(한라산조면암)과 동편(백록담조면현무암)에 서로 다른 암상들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먼저 백록담 서쪽 사면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백록담)조면암 및 이와 층서적 위치와 암질이 동일한 암석들이 북쪽(관음사 등산로), 서쪽(영실기암) 그리고 남동쪽(서귀포시)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북쪽과 남쪽은 수 매의 분출단위가 확인된다.
- 현재의 한라산 백록담은 백록담조면현무암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한라산조면암의 동쪽 측벽을 무너뜨리고 분석구와 방사형의 용암류를 만들고 현재의 화산지형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고문헌 자료

- 최익현(崔益鉉)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漢拏山)유람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최익현(崔益鉉)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은 배를 타면서 을해년에 쓴 시이다.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

낙도에서 몇 해를 세상과 등졌던가, 초여름 좋은 풍경 우로마저 새로워라.
산 안개 걷히고 파도는 고요하며, 한바탕 장유하는 사람되었구려.
저 표묘한 한라산 깨끗도 한데 백록담 영규실 더욱더 새롭구나.
나 같은 신세 어지 산수의 즐거움 알라만.
그래도 먼 데를 구경했다 자랑하리.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漢拏山)유람기 中

고종 10년(1873) 겨울에 나는 조정에 죄를 지어 탐라(耽羅)로 귀양을 갔다. 하루는 섬사람들과 산수(山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한라산의 명승은 온 천하가 다 아는 바인데도 읍지(邑誌)를 보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경한 이가 아주 적으니, 갈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인가?”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산은 4백 리에 뻗쳐 있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서 5월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상(頂上)에 있는 백록담(白鹿潭)은 여러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는 곳으로 아무리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항상 흰 구름이 서려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영주산(瀛洲山)이라 일컫는 곳으로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에 들어가니 어찌 범상한 사람들이 용이하게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하므로, 나는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놀랐다.

-中略-

얼마 후 검은 안개가 킁킁하게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구인(九仞)의 공이 한 삼태기에서 무너지는 꼴이 되므로,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가서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상봉(上峰)을 바라보았다. 여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중앙이 움푹 맨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白鹿潭)이었다. 주위가 1리를 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얕은 곳은 무릎이,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산각(山脚)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였으니 참으로 천부(天付)의 성곽이었다.

-後略-

마. 검토의견 (*****)

-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며 산정화구호인 백록담에 의해 만들어진 빼어난 화산지형을 이룬다. 한라산 백록담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핵심지역으로 한겨울 쌓인 눈을 여름철까지 남아 있어 녹담마설이라는 영주12경중의 하나로 자연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높음.

바. 지정조사 의견('12.08.20)

<문화재위원* ***>

- 영주 12경의 하나인 한라산 백록담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화산섬 발원지이며,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이고, 아울러 한라산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록담이 지닌 역사 및 인문학적인 가치나 자연과학적인 가치에 대하여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백록담을 핵심지역으로 하는 한라산 정상부가 지닌 자연경관적인 가치를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이 지역을 국가 차원의 자연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하는 바이다.

<문화재위원 ***>

- 한라산 백록담은 우리나라 남한에서 제일 높은 곳의 분화구를 형성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영주12경중의 하나로서 주변 기암절벽들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한겨울 쌓인 눈은 여름철까지 남아있어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명승으로서 가치가 충분함.
- 한라산 백록담은 정상부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용암들로 구성되어있어, 이들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함.
- 조면현무암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동쪽측벽을 무너뜨리고 용암류를 만들어 현재의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학술적가치가 크고 신비감을 주며, 고문헌으로는 최익현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과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유람기등이 있어 그 명승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

<* 문화재위원 ***>

- 한라산 백록담은 제주의 빼어난 경승지를 일컫는 영주십이경(瀛洲十二景) 중 하나로서, ‘녹담만설(鹿潭晚雪)’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경관이며, 면암 최익현의 ‘한라산유람기’ 등의 다수의 문헌에 등장하는 제주의 상징적 장소임.
- 제주의 어느 곳에서나 바라보이는 한라산의 정상부로서, 한라산 꼭대기에 다시 솟아오른 화산의 형태는 매우 기이하고 신비스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 정상에 화산분출로 형성된 화구호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한라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한라산 백록담은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제주의 상징적 의미, 전통적 경승으로서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할 가치가 매우 큰 대상으로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1	도평동	산15-1	임	1,439,256	192,145	제주 서귀포시 도평동	제주특별자치도
계				1,439,256	192,145		

아. 지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 의견 없음

자. 의결사항 : 원안가결

4.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낙동강 살리기 41공구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낙동강살리기사업(41공구) 허가내용 변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살리기사업(41공구)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현상변경 경과

- 2010. 4.30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허가(41·42공구)
- 2011. 3.24 서낙동강 하천둔치 공간계획 수정(41공구)
- 2012. 4.25 허가기간 변경(41·42공구/ '10. 4.30~'12. 12.31)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장(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34-8)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살리기 41공구 허가사항 변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일원
 - 사업내용

구분	변경전(강동동·가락동)			변경후(강동동·가락동)		
	공간명	부지면적(m ²)	구성비	공간명	부지면적(m ²)	구성비
41 공구	광장	3,309	2.7	광장	3,309	2.2
	운동공간	2,652	2.2	운동공간	2,518	1.7
	산책로	3,505	2.9	산책로	3,505	2.4
	식재및잔디	48,534	40.4	식재및잔디	48,534	32.8
	자연초지및습지	62,000	51.7	자연초지및습지	90,308	60.9
	계	120,000	100.0	계	148,174	100.0

* 가락동 지역 : 기존 농구장·족구장·게이트 볼 장을 대체하여 풋살구장 설치

- 풋살구장 규모 : L120m×H4.0~5.0m×2개소

* 강동동 지역 : 게이트볼장(0.5m) 및 족구장(1.5m) 매쉬웬스 설치

* 자연초지 및 습지 : 사업내용 변경이 아닌 측량 오류 시정

○ 사업기간 : 허가일 ~ '12. 12. 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50m 이내, 1구역)

라. 검토의견(*****)

- 기존 농구장·족구장 등 운동공간을 풋살구장으로 대체하고 인공시설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철새도래지 주변 생태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재보존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10.11)

< *** 위원 >

- 본건은 기 허가 된 가락동의 운동시설 내용 중 농구장,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풋살 경기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기존 허가내용과 비교 해 볼 때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풋살 경기장 웬스(울타리) 철망이 4~5m 로 너무 높아 철새들에게 시각적인 방해 요인으로 작용 하리라 생각됨.
따라서 운동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웬스(울타리) 철망 높이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제방사면 정비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제방사면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해양레포츠스쿨 조성관련 제방사면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2011. 5.1 해양레포츠스쿨조성을 위한 계류장 설치 허가(철새도래시기 제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1001))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제방사면 정비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38-2670
 - 사업내용
 - 해양레포츠스쿨 조성 관련 계류시설 이용을 위한 제방사면 정비
 - 면적 및 내용
 - 면적 : 3,179㎡ / 정지 및 잔디식재
 - 사업기간 : 허가일 ~ '13. 2.28
- (4) 문화재와의 거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사업부지는 서낙동강 주변 수변지역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밤나무, 비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제방사면 정지 후 잔디식재 등을 통해 수변부 생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9.11)

< *** 위원 >

- 본 건은 가락초등학교 해포분교 부지에 운영 중인 “해포분교 부산수상레포츠 스쿨 조성” 시설지역에 문화재구역(수역)과 경계를 이루는 제방을 사이에 두고 양쪽 경사면에 잔디를 식재 및 정지 하고자 하는 사업임
- 현장방문 결과 제방을 경계로 해포분교 방향 사면으로는 야생식물이 자라고 있었으며 수면쪽 사면에는 일부 정원수(밤나무, 퀴위나무, 비파나무 등)과 뽕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 도래하는 철새가 주로 수금류나 섭금류 인 점을 고려 할 때, 이 지역의 정지 및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은 조류들에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물량장 설치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물량장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물량장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화군수(강화읍 관청리 강화군청)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일원
 - 지정일 : 2000. 7. 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물량장 설치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048-16
 - 사업내용 :
 - 면적=1,000m², 폭=100m, 길이=10m
 - 사업기간 : '13. 2월 ~ 12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갯벌 일부 매립을 통한 물량장 건설을 통해 지역주민 어로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매립면적이 크지 않고 기존 항구에 접해 있어 갯벌 및 저어새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 : **검토

<*** 문화재위원>

- 본 건은 인천시 강화도의 장곶항(천연기념물 제419호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에 인접하여 어민들에 필요한 물양장을 건축하려는 사업임.
검토 결과 본 사업은 현지 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민원 해소 및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물양장 설치를 통한 주변 정리로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물양장 시설물은 기존 지반고에 맞춰서 조성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바. 참고자료 : *** 의견

-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인접필지는 3구역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임.
- 물양장 조성 예정지는 바닷물이 만조시에만 들어오는 곳으로 일부 구간은 이미 육지화되어 있고 기존의 지반고 이상으로 건축시설계획이 없어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이 전무한 실정임.
- 어항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 매립으로 전봇대 등 시설물의 정리를 통해 환경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내 **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방시설본부장(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일원
 - 지정일 : 2000. 7. 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
 - 사업내용 : **시설(***)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철근 콘크리트 구조)
 - 건축면적 / 연면적 : 239m² / 302m²
 - 사업기간 : 허가일 ~ '13. 12. 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건물 신축지역은 이미 ***가 위치해 있고, 창고 및 쉼터 등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 : **검토

< *** 문화재 전문위원 >

- 본 지역의 강화갯벌과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 419호)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시설로 현상변경 대상지역임.
- 본 사업 대상부지는 말도의 ****로 현재 쉼터와 창고가 있으며 일부 지역은 체력단련장으로 조성되어 있음.
- 본사업의 기존의 쉼터와 체력단련장을 철거하고 **의 본관과 ***을 신축하는 공사임. 따라서 기 조성돼 있는 창고와 쉼터, 체력단련장을 철거 후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나 관련 폐기물들이 강화갯벌과 저어새 번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건부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바. 참고자료 : *** 의견

-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통제보호구역으로 ***가 위치하고 있음.
- 기존 쉼터 및 창고를 철거한 후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8.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주변 농로 포장

가. 제안사항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주변 농로포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주변 농로포장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무주군수(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수한길 22)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 소재지 :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115외 일원
 - 지정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농로포장
 - 사업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산37번지
 - 사업내용 : 기존 농로 포장
 - L(길이)=350m, B(넓이)=3m, T(두께)=0.2m
 - 사업기간 : '12. 11월 ~ '12. 12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 기존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기존 비포장 농로로 인한 농기계 출입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당구역은 지정구역 밖 1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9.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외
 - 지정일 : 2000. 7. 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 사업내용 : 1층, 높이 4.95m, 건축면적 12.36㎡, 철근콘크리트조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70m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 : 기존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부지는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기존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신청부지 주변으로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0.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지형지명 안내 표지석 설치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지형지명 안내 표지석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지형지명 안내표지석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토지리정보원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지정일 : 1982. 11. 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독도 지형지명 안내표지석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동도 선착장 주변)
 - 사업내용
 - 표지석 규모 및 재질 : 2.3×2.3×2.6m, 대리석(오석) 및 콘크리트 기단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독도 봉우리명 등의 지명 제정을 계기로 독도의 지형 및 지명을 안내하는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표지석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11.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상수도 시설 공사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기 허가되었던 상수도 시설공사 중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 허가('10.4월) 받은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상수도 시설공사 중 일부 변경되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안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일원
 - 지정일 : 1965. 4.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홍도 1구 상수도 시설공사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1구 일원
 - 사업내용

구분	당초	변경
수원시설	암반관정 500m ³ /일, 2개소	암반관정 1,000m ³ /일, 1개소
정수시설	해수담수시설 V=250m ³ 15×9×H5.7m / 2개소	해수담수시설 V=5000m ³ , 18×18×H6.5m / 1개소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설치예정지에 대한 사용협약이 되지 않아 한곳으로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2.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119 외

○ 지정일 : 2012. 10. 5.

(3) 신청내용

○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기존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의 보존관리에 일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한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 지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3.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대상문화재

- (1)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50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 (2)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39-3
- (3) 지정일 : 1962. 12. 07.

라. 주요 신청내용

- (1) 신청인 : 남해군수
- (2) 조정내용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신청 내역

소재지	당초	변경	비고
	1구역	2구역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35-4(답), 35-5(답) 36-1(답), 36-2(답) 37(답), 38(답) 산9-44(임)	좌동	
소계	7필지	7필지	

- (3) 조정사유 : 남북의 허용기준 1구역이 상이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고 숲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일부 완충구역을 둘 경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마. 검토의견(*****)

- 남해군의 조정 신청안에 대해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용 및 조정 필요
- 현지조사 <'12.09.06/***, *** 문화재위원, *****)>
 - 현지 조사 결과 허용기준 변경 신청한 7필지중 숲과 연결된 2필지(38,산 9-44)는 현재 북쪽 1구역 경계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 위 2필지에 10m이상의 건물이 신축될 경우 숲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35-4, 35-5, 36-1, 36-2, 37)만을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4.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체험학습장 조성

가. 제안사항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해남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94호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번지 등
 - 지정일 : 1998. 10. 1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체험학습장 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
 - 사업내용 : 공룡발자국 화석 레프리카 설치
 - 제3보호각 앞 화석레프리카 설치, 안내판, 암석전시, 자갈길 조성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화석 레프리카 제작을 통하여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 홍보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나 문화재 경관 보호와 원지형 보존을 위하여 사업위치(제3보호각 뒤편 어린이 놀이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12. 10. 17.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이 사업은 우항리 화석산지에서 산출되는 공룡발자국을 비롯한 각종 발자국화석들의 복제물과 이곳의 지층에서 산출된 암석 표품들을 야외 지표에 설명판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탐방객들이 우항리 화석산지의 산출화석 특성과 자연사적 가치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이 우항리 화석산지의 핵심 구역 중 하나인 3보호각 바로 전면에 위치함으로, 이 지역의 경관 보호와 원지형 유지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보다 외곽 지역으로 변경하여 될 것임.
- 변경 대상지 후보로 3보호각 남서측 배후에 위치한 구릉지 사면(현재 공룡모형 등 일부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탐방객들의 쉼터 및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 지역 유휴 공간의 지표면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됨.
- 전시물 설치시에 발자국화석 복제물(레플리카)의 설치는 경관 관리의 측면에서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암석 표품들에 대한 설명판의 경우, 단순한 암석명의 표기가 아닌 우항리 화석산지의 자연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과 사진 등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5.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07외 31필
 - 지정일 : 1968. 5.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관광숙박시설(가족호텔) 건립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
 - 사업내용 : 가족호텔 건립

층	별	면적	용도
지하층	지하2층	1524.11m ²	숙박시설(6객실), 부대시설
	지상1층	1139.89m ²	숙박시설(8객실), 부대시설
지상층	1층	686.06m ²	숙박시설(10객실)
	2층	403.03m ²	숙박시설(8객실)
계		3,753.09m ²	숙박시설(32개실)

- 건물높이 : 7.59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조경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약 53m 이격(1구역 : 원지형 보존)

라. 검토의견 (*****)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에서 가족호텔을 건설하는 것은 문화재 경관과 제주도 형성초기의 화석지층의 훼손우려가 있음.

마. 참고자료 (문화재**** : **** 의견)

- 당해 신청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95호 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로부터 약 53m 이격된 것으로서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고시된 곳으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 이전에 타법에 의하여 허가(3개소)되었거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존 건물 3동 철거)를 득한 건물들임을 감안, 향후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문화재 경관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바. 참고자료 ('12. 10. 19.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서귀포층은 약 180여만년 전 제주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초기, 천해(淺海) 환경하에서 퇴적되면서 다량의 패류화석, 산호, 이빨화석, 개형충 등 다양한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으로서 지질학적·자연탐방의 교육 학습적 가치가 매우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지하수를 보전하여 줌으로서 제주도에 서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와 주변은 수직의 해식절벽을 이루고 있어 태풍이나 폭풍에 의하여 자주 붕괴가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해식절벽 위에서 해안 주변을 바라보는 경관도 수려하여 조망점으로서도 중요한 곳임.
- 따라서 가족호텔 신축예정지는 현상변경허가기준 1구역의 기준(신축이나 증개축 불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사. 의결사항 : 부결

16.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을 재신청하는 사항임.
- ※ 2012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되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 지정일 : 1971. 9.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
 - 사업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 건축물 신축 : 2동, 주차장 설치
 - A동 : 최고높이 4.9m/건축면적 396㎡, B동 : 최고높이 4.45m/건축면적 B동 99.98㎡
 - ※ 6월 신청사항에서 변경된 사항 : 사업 위치 변경(산 1,2임→산2, 869-1임), 건물 건립위치 1구역→3구역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동 건물은 사업 예정지 중 1구역에서는 야외 전시장(돌 전시) 및 산책로 조성사업, 3구역에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변경 신청한 사항임.
- 건물은 동굴 경계선에서 156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사료되나 소천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시 동굴 관계 전문가 입회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12. 10. 19.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전시관(수석 전시관) 건축예정지는 소천굴의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으며, 별로 훼손되지 않은 사구층이 발달하고 있는 지역임.
- 주성분이 석영(SiO₂)으로 이루어진 충남 태안의 신두리 사구와는 달리 패사(貝砂; 주성분 CaCO₃)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의 사구는 그 자체로도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사구층의 패사가 빗물에 용해되어 용암동굴인 소천굴로 유입·침전된다면 소천굴도 용천동굴과 같이 세계자연유산적 가치를 갖는 용암동굴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사업예정지는 소천굴로부터 약 270m(천연기념물 지정구역으로부터는 약 170m) 떨어져 있으며, 지표면의 경사가 소천굴의 발달방향과 나란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예정지에 내린 빗물이나 지하수가 소천굴로 유입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림용암동굴지대 현상변경허가 기준(3구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1구역에 해당되는 산책로 조성도 기준(원형보존)에 따라 불허되어야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7.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주변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 전주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주변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 전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주변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용 전주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 2012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경관훼손우려)되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SK텔레콤 서부 N/W본부 제주품질관리팀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 지정일 : 2004. 4. 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SKT 중계기 및 우도면 무인카메라 전주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우도면 연평리 *****
 - 사업내용 :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용 전주 설치(높이 9m, 사업면적4m²)
 - ※ 9월 신청과 변경사항 : 전주 높이 변경(12m → 9m)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30m 이격(1구역 : 원지형 보존)

라. 검토의견 (*****)

- 통신 중계기 및 우도면 무인카메라 전주 설치 사업은 우도 홍조단괴 반출의 감시 목적도 있으며, 전주 높이를 3m 낮춰(12m→9m)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향후 타사 통신중계기 설치 신청 요청시 동 전주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8. 「담양 식영정」 주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가. 제안사항

「담양 식영정 일원」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담양 식영정 일원」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75-1번지 일원
 - 지정일 : 2009. 9. 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담양 식영정 일원」 주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 사업위치 : 전남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 사업내용
 - 목적 :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하류부 생태유지수 공급
 - 제당증고: 1.6m[EL(+) 81.25m → EL(+) 82.85m]
추가저수량 5,888천 m^3 [$17,368\text{m}^3$ → $23,256\text{m}^3$]
 - 여수토 : 레디알게이트($7.5 \times 7.0 \times 4$ 련), 설계홍수량 $1,688\text{m}^3/\text{S}$
[당초 : 고정식 여수토 L=60m, 설계홍수량 $495\text{m}^3/\text{S}$]
 - 취수시설 : 취수탑[H= 28.5m], 취수공[$1.5 \times 1.5 \times 4$ 공]
 - 도로보강 1조 : 260m
 - 부대공사: 대체시설 등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3. 12. 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0m 인접

라. 검토의견 (*****)

- 「담양 식영정 일원」 및 천연기념물 제539호 「충효동 왕버들군」 주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지역은 제방고를 높여 홍수위 수위를 1.1m 높이는 사업으로 주변 국가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 광주호 주변 도로 선형 사업이 계획 중으로, 계획중인 도로 공사는 식영정 앞 현재 도로 높이에서 약 2m 높이는 계획을 하고 있어,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과 도로사업과 함께 주변 국가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10. 10.)

<*** 문화재위원>

-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은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기존 제방 높이 81.25m를 82.25로 승고하고 홍수위 수위를 78.75m에서 1.1m 상승시키는 사업임.
- 현장 확인결과 식영정 지정구역의 최하단의 현재 고아주호의 만수위에 비해 약 3.5m 여유가 있고, 식영정은 약 17m의 상위에 있어 광주호의 수위 1.1m의 승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식영정 앞을 통과하는 지방도는 광주호 호안에 석축을 쌓아 건설된 것으로 수위 상승에 따른 기초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연계되어 도로 개설의 가능성이 있다.
- 지방도는 식영정 앞 도로를 약2m 높이는 계획이 되어있어, 이 경우에는 식영정 앞부분은 요(凹)지를 이루게 될 것이므로 식영정의 명승적 가치에 중요한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광주호의 만수위 승고가 도로 지면의 승고로 이어진다면, 광주호의 제방 승고 공사는 식영정에 심각한 경관적 가치를 저해하게 되고, 특히 이 공사는 농업용수 확보 목적의 공사가 아니므로 현상변경 신청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천연기념물 제539호 충효동 왕버들군으로부터 약 100여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서식환경의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왕버들군의 상류부의 유로를 변경하기위한 도수로 건설계획은 지하수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거나, 분포지에 접하고 있는 소규모 습지의 수분 함유량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상변경 신청이 있을 시 식물생태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전문위원>

- 1.6m 제당증고로 인하여 식영정 근접하여 지나가는 지방도 887번도로 노면이 1.8m 높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식영정 진입공간 및 주변 지형경관 및 풍경의 변화가 예상됨.
- 또한 제당증고시 불가피하게 충효교 높이를 약 1.2m 높이고, 260m길이로 이설하는 접근로도 함께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식영정으로부터 상류하천 조망경관의 변화와 함께 명승 제 57호, 식영정일원의 풍경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이 예상됨.
- 배수로정비사업중 제1호 배수로공사(연장 476m, 박스 130m)는 갈수기에 천연기념물 왕버들군 내부로 배수되는 기존 개거수로의 수량변화가 없도록 설계변경하여 시행 필요. 즉 승수로 No.2+40과 연결되는 박스수로 바닥고를 15cm 높게(승상) 설계변경(EL 80.35를 80.50)하여 배수공사시행하여 갈수기에는 왕버들군 생육지로, 호우시에는 많은 우수를 제1호배수로를 통하여 광주호로 배수시키는 설계변경 필요함.

- 시가문화권 유적의 하나이자 광주광역시 문화재인 환벽당과 근접하여 계획된 증암천 정비사업중 하천폭을 확대, 하상환경을 변형하는 하천정비사업은 시가문화권 경관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이번 심의대상인 광주호 독높이기사업은 식영정주변 도로의 높이를 높이는 도로공사, 교량건설공사를 초래하여 식영정일원 경관에 심각한 변화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식영정 바로 아래 하단 지형변경, 식영정 진입공간 변화를 초래가 예상되나 이번 심의설명자료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없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됨.
- 부대사업중 증암천 하천정비사업은 증암천의 자연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천연기념물 왕버들군 생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배수로 제1호사업은 승수로 연결부위 바닥고를 15cm 높이는 사업계획변경하여 추진.

<* 의견>**

- 식영정 앞 광주호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식영정 주변 지역의 변화 우려, 식생, 환경, 경관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19. 「서울 백악산」 **** **생활관 증축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 백악산 일원」 내 **** ****(****/****/*****)**생활관에 대한 내부수리 및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 ****(****/****비/*****)**생활관(1997년 건축)에 대한 내부수리 및 1개층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지원**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청운동 *****
 - 지정일 : 2009. 12. 9.
 - 백악산은 서울의 북현무에 해당하는 북쪽의 주산으로서 조선왕조가 도성을 정하였던 사상과 지형적 기본원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결합되어 뛰어난 경승지이다.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생활관 내부수리 및 1개층 증축
 - 사업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
 - 사업내용 : 증축 1,878.65㎡ 및 내부수리

구분	기존규모	변경규모	증축규모
****/ ***** 건물	○ 지하2층/지상4층 - 지상4층은 일부만 ○ 건축면적 : 1,467.84㎡ ○ 연면적 : 7278.32㎡	○ 지하2층/지상4층 - 지상4층 전체 증축 ○ 건축면적 : 1,467.84㎡ ○ 연면적 : 8,202.52㎡	○ 지하2층/지상4층 ○ 좌동 ○ 증 924.2㎡
***** 건물	○ 지하1층/지상3층 ○ 건축면적 : 949.2㎡ ○ 연면적 : 3,829.67㎡	○ 지하1층/지상3층 ○ 건축면적 : 949.2㎡ ○ 연면적 : 4,784.12㎡	○ 지하1층/지상4층 ○ 좌동 ○ 증 954.45㎡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현 **생활관은 이미 199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1개층 증축에 따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현지조사 의견

< *** 위원 >

- **** **생활관 개선사업은 건물위치가 분지형으로 인접대로변 등 중요지역에서 조망이 쉽지 않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질감 및 색깔등은 기존건물과 통일성 유지 필요.

<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의 **생활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3층 건물(일부 건물은 부분 4층 규모)을 4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접 대로변에서 조망이 되지 않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증축되는 건물의 재료 및 색채 등은 기존건물과 통일성 유지함으로서 이질적이지 않게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20.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주택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주택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주택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 지정일 : 2011. 6.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주택신축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545㎡
 - 건축면적 : 146.52㎡
 - 건폐율 : 9.48%
 - 연면적 177.12㎡, 지하층 30.60㎡, 1층 146.52㎡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12.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43m

라. 검토의견 (*****)

-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1구역(원지형보존)으로 산방산 주변 문화재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의견)

-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산방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43m 이격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1구역(원지형보존)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1구역의 외곽 경계를 이루는 2차선도로와 접한 곳으로서, 위성지도상 주변 1구역내 기존 건축물이 없는 점과 향후 경관 등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바. 의결사항 : 부결

21.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수목 벌채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수목 벌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수목벌채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 지정일 : 2011. 6.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수목벌채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 사업내용 : 농지내 수목벌채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12. 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45m 인접

라. 검토의견 (*****)

○ 농경지내 경지 정리를 위하여 수목벌채를 신청한 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 제주서귀포 산방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수목 벌채시 산방산 주변 문화재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의견 / '12. 10. 10.)

○ 본 사업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제주서귀포 산방산으로부터 약 45m 이격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는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수목이 자연천이되어 소나무와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에 따라 농경을 위하여 소나무를 벌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산방산 경관등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됨.

바. 의결사항 : 부결

【검토사항】

천기 2012-10-22

22. 「포천 화적연(禾積淵)」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포천 화적연(禾積淵)」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천 화적연(禾積淵)」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2. 9월 고서화 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 자원조사 발굴조사 연구용역 결과 우수자원 선정
 - '12.10.16~17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장,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포천시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포천 화적연(禾積淵)」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번지 등 / 22필지 208,238㎡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화적연은 한탄강의 강물이 휘도는 아름다운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기암으로, 강물과 주변 석벽 및 자연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높음
 - 하천이 휘돌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과 그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암괴가 13m나 솟아오르면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짙은 색의 현무암 절벽과 밝은 색의 암주, 질푸른 빛의 물이 서로 어우러져 훌륭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
 - 화적연은 한탄강변의 지형 경관 중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줌. 대보 화강암을 뒤덮은 현무암층, 현무암 주상절리, 화강암 암반, 상류에서 공급된 풍부한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지형 요소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 지형적 가치가 높음. 이들 지형 요소들은 서로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며, 하천의 곡류와 하도의 변화, 그리고 여름철 많은 하천의 유량으로 강하게 마식하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암괴가 화적연으로 불리면서 그 아름다움이 칭송을 받아옴.

- 예부터 화적연은 기우제 터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양한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화적연에 대한 많은 ‘고시문’과 ‘실경산수화’가 전해져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음
- 문화재구역 : 22필지 / 208,238m²
- 문화재관리단체 : 포천시장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화적연이 위치한 한탄강은 임진강의 한 지류로서 약 133.4km의 길이이며, 발원지는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 백자산에서 시작되어 철원, 포천, 전곡을 지나 연천군 군남면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만남.
- 유래 및 전설
 - 화적연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와 관인면 사정리 경계에 위치한 연못으로 경관이 수려하여 영평 8경중 1경에 해당함.
 - 우뚝 솟아오른 화강암이 마치 벧 죠단을 쌓아 올린 것 같은 형상이어서 화적(禾積)이라는 이름이 붙여짐.
- 지형·지질 현황
 - 철원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은 현무암 용암대지와 이를 개석하여 흐르는 임진강과 한탄강의 경관임.
 - 신생대 현무암(15만년~57만년 전) 용암대지 이전의 모습은 지역적으로 화강암, 편마암, 중생대 화산암 등으로 이루어진 지형들이었고, 현무암과 화강암, 현무암과 편마암 등의 접촉대를 따라서 하천의 개석이 많이 이루어짐. 이러한 곳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암석들이 뚜렷이 구분이 되면서 공존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냄.
 - 북동-남서 방향의 추가령 열곡대를 따라 용암대지가 형성되고 한탄강이 이를 개석하면서 협곡의 형태로 흘러감. 한탄강 중상류 일대는 명성산 화강암 산지와 추가령 현무암 대지의 풍화·침식물이 교호하면서 하천 및 화산 지형의 명소로 꼽힘.
- 인문현황
 - 『여지도서』에 ‘화적연’은 영평현 관아 북쪽 25리에 있다. 강원도 철원부의 경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남쪽으로 흐른다.’라고 기록됨.
 - ‘화적연’에 대해서는 여러 고시문에서 명승으로서의 웅장함을 노래하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곳으로서 읊고 있음.

마. 검토의견 (*****)

- 한탄강의 강물이 휘도는 아름다운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기암으로, 강물과 주변 석벽 및 자연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고 있어 경관이 뛰어나 명승지정 가치가 높음.
- 예부터 화적연은 기우제 터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양한 기록이 전하고 있고, 화적연에 대한 많은 ‘고시문’과 ‘실경산수화’가 전해져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음.

바. 지정조사 의견('12.08.20)

<문화재위원* **>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와 관인면 사정리의 경계 한탄강변에 위치하는 화적연은 넓은 하상과 현무암 주상절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남겨진 높이 13m 에 달하는 크고 넓은 기암의 암반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민간인의 기우제 터로도 알려져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다양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고, 화적연이 지닌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자연경관적인 가치를 감안할 때 이 일대를 국가지정 명승으로 추천함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문화재위원 ***>

- 화적연(禾積淵)에 대해서는 이곳의 산수에 반하여 조선 선조때 15년간 영의정을 지낸 사암 박순(1523~1589)이 동서분당을 겪으면서 영평현으로 낙향하여 많은 시문을 남겼고, 금강산의 유람길목에 있어 조선시대 선비들이 유람길에 들러는 명승지였으며, 서계 박세당(1629~1703), 미수 허목(1595~1682), 겸재 정선(1676~1759), 면암 최익현(1833~1906)등의 시문과 기록들이 남아있다.
- 그리고 화적연은 조선전기 기우제터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고 여지도는 물론 각종 실경산수화가 전해오고 있어 경관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 따라서 자연경관적으로나 인문경관적으로 화적연은 국가명승이 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문화재위원 ***>

- 화적연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화강암류가 오랜 세월동안 용기, 풍화, 침식작용을 받아 지표에 노출된 후, 신생대 4기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와 부정합을 이루면서 피복되어 있으며, 한탄강의 침식작용으로 여러 가지 하식지형들이 발달하고 있음.
- 특히 화강암의 커다란 암반이 한탄강의 하식작용을 받아 마치 물위에 높이 약 13m의 뱃단을 쌓아 올린 것 같은 현상으로 발달하고 있어 화적연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 화적연이 주변의 하식지형(곡류하천, 포인트바, 하식절벽, 하식동 등), 식생등과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포천 화적연 일원’은 명승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m ²)	지정면적(m ²)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	임	8,033	8,033	국(국토해양부)
	산115-10	천	5,210	3,692	국(국토해양부)
	산115-2	천	273,448	57,381	국(국토해양부)
	산116-1	임	5,932	5,932	***
	산116-3	임	1,983	1,983	**
	산116-4	임	4,680	4,680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23	임	12,079	1,390	***
	26	전	50,937	25,297	국(국토해양부)
	66	전	6,674	6,674	국(국토해양부)
	67	전	215	215	국(국토해양부)
	67-1	전	13	13	국(국방부)
	산274	임	1,072	1,072	***
	산274-1	임	2,403	2,403	국(국방부)
	산274-2	임	22,115	15,980	***
	산274-3	임	5,896	5,896	국(국방부)
	산274-4	임	82	82	***
	산274-5	임	8,797	7,838	***
	산274-6	임	22,115	20,665	***
	산574	천	1,197	1,070	국(국토해양부)
	산574-1	천	355,433	37,942	국토해양부
	916	도	26	26	국(국방부)
합 계	22필지		788,314	208,238	

아. 의결사항 : 원안검토

23.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문화재 지정 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가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가 완전히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76호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 (3) 소재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732
- (4) 해제내용
 -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76호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732
 - 수량 : 1주
 - 지정일 : 1982. 11. 09.
 - 지정사유 : 옛날 이 마을에 살던 유씨의 9대조인 유동지(劉同旨)라는 사람이 심은 것이라고 전해오고 있으며, 매년 새해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나무 앞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각 가정의 행운을 비는 동제를 지내는 등 마을의 당산목으로 신성시 해 오던 나무라고 함.

라. 검토의견 (*****)

-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는 현지조사 결과 완전 고사되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전문가 조사 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2.09.05.)

<*** 문화재위원>

- 남해군이 제공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나무병원(***)에 의뢰해 느티나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년 이전부터 느티나무외줄진딧물 등 병충해 피해가 발생했으나 주변이 친환경 농경지인 관계로 효과적인 방제가 어려웠고, 지속된 고온으로 인한 피소(별데임) 피해까지 입어 수피의 상당부분이 고사했으며, 지체부의 조직도 약 18% 정도만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함. 또한 2011년에는 영양제수간주사와 엽면시비 등을 실시했으나, 2012년 7월에는 살아 있는 부분이 3% 미만으로 판단되어 영양제수간주사와 엽면시비 등도 실시할 수 없었다고 함.
-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2012년 9월 5일, 느티나무는 수피가 대부분 벗겨졌고 노출된 조직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 보였으므로 이미 고사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천연기념물 제276호 갈화리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대상 느티나무는 태풍으로 인하여 가지 약 80%이상이 절단됨에 따라 느티나무의 기본수형을 잃은 채 유지되어 왔으나 수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최근 자연 고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지가 절단된 이후 이미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으나 현재는 완전 고사된 상태이므로 보존가치가 없어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전 문화재위원>

- 2012년 09월 05일 현재 갈화리 느티나무는 살아있는 잎이 전혀 없고 줄기는 수피가 박리되어 떨어져 나오고 있음. 충전처리 부분에는 버섯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내부는 썩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의 관찰 상태로 보아 이 느티나무는 완전 고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 지정에서의 해제를 건의 함.
- 이 느티나무는 1982년 11월 4일 전국에 56주의 노거수를 일괄 지정할 때 포함된 나무로서 '유동지가 심었다'는 전설 한줄 밖에 없으며, 나무의 규모도 특별히 크지 않았음.
- 따라서 문화재로서 보존할 값어치는 전혀 없으므로 후계목 및 주변 정비에 문화재청 차원의 예산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 원안검토

24. 「제주**** 건설」 오탁방지막 설치계획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 건설」 관련 오탁방지막 설치계획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건설」 오탁방지막 설치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 추진경과

- '08. 07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 '08. 08월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요구(→해군본부)
- '08. 12월 “연산호 서식처 해양환경 변화예측 조사용역” 계획 제출(←해군본부)
- '09. 06월 “연산호 서식처 해양환경 변화예측 조사용역” 보고회의
- '09. 0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조건부 허가
 - 공사 중 부유사/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오탁방지막 설치 2km)
 - 태풍, 고파랑에 의해 10여차례 훼손·복구 반복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실시
 -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군락 보존대책 마련

다. 검토내용

(1) 신청인 : 국방부 장관

(2)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해상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확산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고정식 오탁방지막을 운영하였으나, 현장 특성상 항시 발생하는 너울성 파랑과 고파랑에 의한 고정식 오탁방지막의 잦은 파손으로 해양 폐기물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변 수역의 해양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음.

-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시 기대한 오탁방지막의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지역적 특성의 자연적 환경영향에 기인하여 효과적인 부유사 확산 저감방안이 필요. 당초 환경영향 평가에서 협의된 오탁방지막 설치수량을 전량 제거하고 해상장비인 바지에 이동식 이중 오탁방지막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유사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하고자 함.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 협의

- 변경 내용

- 기존의 “고정식 오탁방지막”에서 “이동식 이중 오탁방지막으로 변경

라. 검토의견(*****)

- 당초 허가조건에는 오탁방지막 설치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공사 착수이후 고정식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인식됨.
- 고정식 오탁방지막은 일반이 허가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현상변경 허가 변경신청의 대상임을 국방부에 통지할 예정임.

마. 의결사항 : 원안검토

【보고사항】

천기 2012-10-25

25. 「장흥 옥당리 효자송」 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통합 조정 보고

가. 보고사항

「장흥 옥당리 효자송」 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통합·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장흥 옥당리 효자송」 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통합·조정하였음을 보고함
 - 중요민속문화재가 신규로 지정('12.4.13)되면서 동 지역에 인접해있는 장흥 옥당리 효자송(천연기념물 제356호)등을 통합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 마련함[12년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결과('12.10.15)]

다.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등 4건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중요민속문화재 제161호 존재고택, 제269호 장흥 신와고택, 제270호 장흥 오헌고택)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5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에서는 개수·보수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는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라. 검토의견 (*****)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한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 지역은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 당초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26.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22건)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신청내용 :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195외 27개소 ○ 허가내용 - 굴착깊이 : 52m - 굴착지름 : 76mm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 도래지	○ 신청인 : (주)**엔지니어링 *** ○ 신청내용 :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 사업위치 : 부산시사하구 을숙도 남단 남해역 ○ 허가내용 - 굴착깊이 : N치(지반강도) 20이상 경질 모래층 하부 2~3m - 굴착지름 : 76mm - 위치 : 을숙도 남단 해역 26공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자 : *** ○ 허가사항 : 체험학습 및 종 보존(전시, 관상용)을 위한 사육 ○ 허가기간 : 2012. 8. 30. ~ 2017. 8. 29. ○ 개체수 : 원앙 2수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 허가사항 : 국내 산양 생태축복원사업을 위한 증식·연구용 사육 ○ 허가기간 : 2012. 9. 4. ~ 2017. 9. 3 ○ 개체수 : 산양 3마리 	<허가>
	천연기념물 제328호 큰고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 ○ 허가사항 : 야생동물 관찰원 자연학습 자료 활용을 위한 사육 ○ 허가기간 : 2012. 9. 18. ~ 2017. 9. 17. ○ 개체수 : 큰고니 2마리 	<허가>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허가사항 : 3D입체 자연다큐멘터리 <한국의 강> 촬영 ○ 허가기간 : 2012. 9. 22 ~ 2012. 12. 20 ○ 개체수 : 남생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2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장 ○ 허가사항 : 전시·관람 및 자연학습 자료 활용을 위한 사육 ○ 허가기간 : 2012. 9. 26. ~ 2017. 9. 25. ○ 개체수 : 황조롱이 2마리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 허가사항 : 종 번식 및 연구를 위한 사육 ○ 허가기간 : 2012. 10. 5. ~ 2017. 10. 4. ○ 개체수 : 원앙 320마리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상주시장(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 허가사항 : 수달의 식이습성 등을 연구하기 위한 폐사체 부검 ○ 허가기간 : 2012. 10. 8 ~ 11. 7 ○ 개체수 : 수달 1마리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천연기념물 제324-6호 소쩍새(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천연기념물 제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국립문화재연구소) -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기념물 제323-2호 붉은배새매(국립문화재연구소) - 천연기념물 제201-3호 흑고니(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허가>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보은군수 ○ 허가사항 : 솔방울 각 2kg ○ 허가기간 : 2012. 09. 12 ~ 10. 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남부지방산림청 ○ 허가사항 : 솔방울 2kg ○ 허가기간 : 2012. 10. 9 ~ 10. 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관방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주)해양도시가스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도시가스 배관 매설 - 사업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64-2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배관(300A) 매설 등 ○ 허가기간 : 2012.10.11~11.3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75호 문경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문경시장 ○ 허가사항 : 문경새재 전동차 유료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표소 설치 및 탐방로내 전동차 운행 ○ 허가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표소 설치 : 허가일로부터 2013.2.28 전동차운행 : 허가일로부터~영구 	<허가>
	명승 제41호 순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순천시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만 갯벌 구역 내 고엽갈대제거 22,000㎡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3.30 	<허가>
	명승 제17호 태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부산**대장 ○ 허가사항 : ** 내 법면 유실로 인한 경계시설 보호 및 안전위험 감소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면 개비온 매트설치 1식 - 녹생 마대설치 1식 - 경계시설 계단설치 1식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2.12.14 	<허가>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삼척시장 ○ 신청내용 : 대금굴 비상통로 계단 안전시설(난간대) 설치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17 ○ 허가내용 : 비상통로 계단 난간대 설치(L=203m H=1.0m) 	<허가>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내용 : 거문오름 안내부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흘리 산 100 ○ 허가내용 : 거문오름 안내부스설치(1.2*1.8*2.4)0.65㎡ 	<허가>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신청내용 : 육교설치기간 변경 ○ 사업위치 : 부산시사하구 낙동강 하구둑 주변 강변대로(65호 광장) ○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기간 : '12. 2.28 ~ '12. 9.30 - 변경기간 : '12. 2.28 ~ '12. 11.30 	<허가사항 변경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송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신청내용 : 가옥 철거 및 하동 송림 주변 정비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번지 일원 ○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받는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허가내용 : 가옥 철거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받는자 : 하동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허가내용 : 가옥 철거 및 하동송림 주변정비 	<허가사항 변경 허가>
	명승 제59호 달마산 미황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달마산 미황사 ○ 사업명 : 달마산 미황사 내 간이 샤워실 신축(1동 60㎡) ○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 ○ 변경허가사항 :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2012.8.9~2012.8.31 - (변경) 2012.8.9~2013.6.30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84호 제주 당치물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내용 : 양어장 개축(시설 규모 및 면적 : 2,404㎡) ○ 사업위치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 ○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기간 : 2012. 5. 24. ~ 2012. 9. 30. - 변경기간 : 2012. 5. 24. ~ 2012. 12. 31 	<허가사항 변경 허가>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